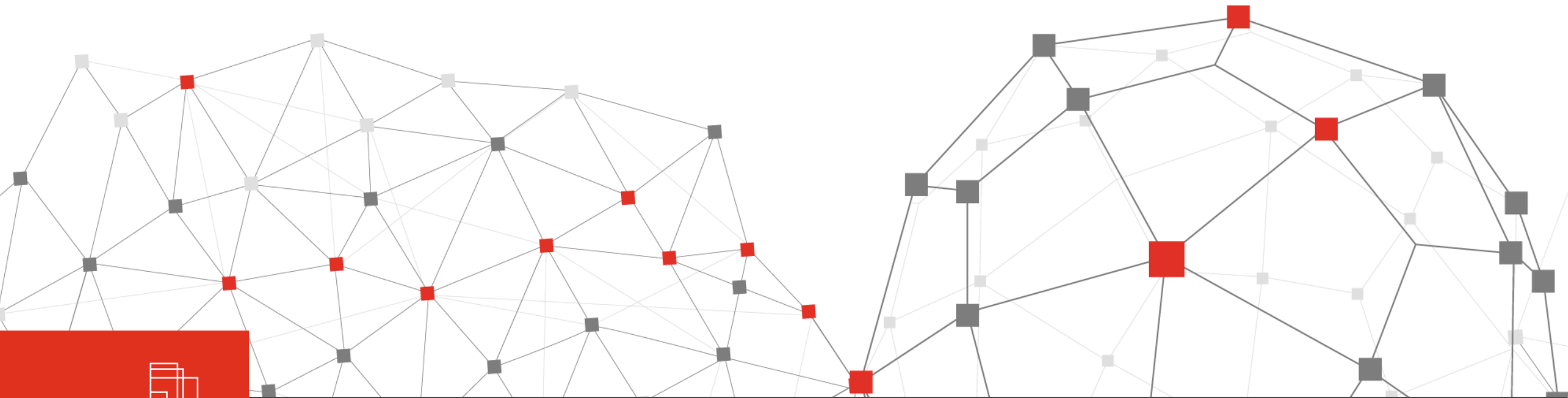


COVID-19

코로나19 발발 기간 중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



3월 4일 자 훈령 11/CT-TTg에서, 베트남 총리는 정부 부처들 및 국가 기관들에 코로나19 발발 기간 중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급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

이와 관련한 지난 호 뉴스레터는 본 [링크](#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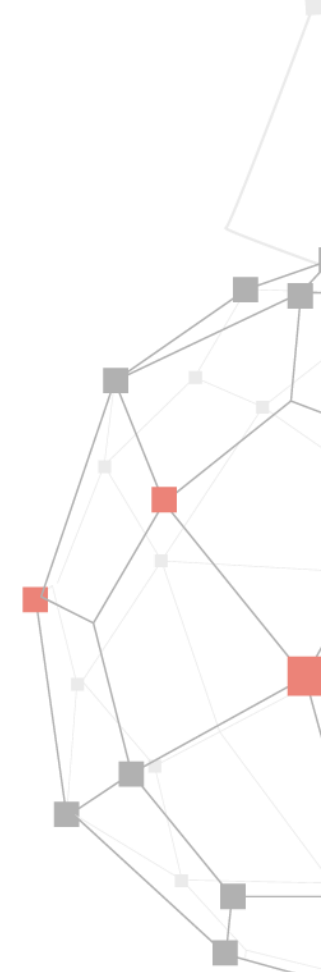
훈령11에 대한 응답으로,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(Ministry of Labour,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), 베트남 사회보장국 (Vietnam Social Security), 베트남 노동총연합 (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) 및 지역 당국들은 사회보험료 및 노동조합비의 납부 유예/연기를 가이드하기 위한 다양한 공문들을 발행했습니다.

퇴직 및 유족 연금 기금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

1. 중앙 정부 당국의 지침

퇴직 및 유족 연금 기금 (사회보험의 세 가지 기금 중 하나로, 회사와 근로자는 각각 근로자 급여의 14%와 8%를 납부해야 함) 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,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3월 9일 자 공문 797/BLDTBXH-BHXXH 및 3월 13일 자 공문 874/BLDTBXH-BHXXH를 발행하였고, 베트남 사회보장국은 3월 17일 자 공문 860/BHXXH-BT를 발행하였습니다.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:

- 적용 대상: 하기 조건들 중 하나를 충족하는, 승객운송, 여행, 숙박, 식당 및 기타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:
 - i. 근로자를 위한 충분한 업무를 확보하지 못하여, 사회보험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50% 이상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기업들; 또는
 - ii. 회사의 자산 (토지 제외) 총 가치의 50% 이상에 상응하는 손실을 겪는 기업들.
- 시기: 이러한 6월말까지의 납부 유예와 관련하여 베트남 사회보장국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(공식적인 신청 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) 만약, 동 유행병이 6월말까지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, 사회보장국은 이를 12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- 납부 유예기간 동안, 기업들은 근로자 복리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,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의 보험료 뿐 아니라 사회보험 내 다른 두 가지 기금 (질병 및 출산 기금,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)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.



2. 지역 당국의 지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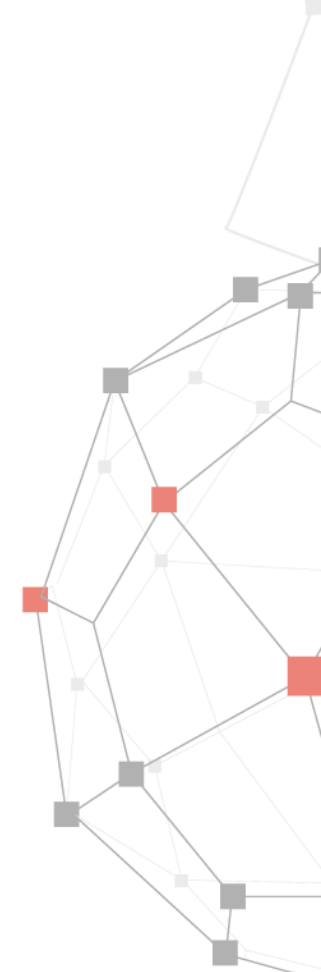
다양한 지역 사회보험국들 및 전국에 있는 기타 지역 당국들은 동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지침들을 발행했습니다. 그 중에는 다음의 공문들이 있습니다.

- 호치민시 사회보험국이 발행한 3월 23일 자 공문 553/BHXXH-QLT
- 하노이 사회보험국, 노동보훈사회국 및 재무국이 공동으로 발행한 3월 24일 자 공문 882/HDLN-BHXXH-LDTB&XH-TC
-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국이 발행한 4월 1일 자 공문 9739/SLDTBXH-LD

이러한 공문들에 따르면,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각 지역 노동보훈사회국 (인력의 50%가 임시로 휴직한 경우) 또는 지역 재무국 (총자산의 50% 이상의 손실을 겪는 경우)에 평가를 위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. 노동보훈사회국과 재무국은 그들의 지역 단위 산하 기관에 동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. 이후, 적격한 기업들은 사회보험료 납부 연장을 위하여 노동보훈사회국/재무국 또는 지역 단위 기관들이 발행한 확인서를 관련 사회보험국에 제출해야 합니다.

노동조합비 납부 연기

베트남 노동총연합은 노동조합기금 납부를 6월 30일까지 (그리고 12월 31일까지 연장이 고려될 수 있음) 연기하는 3월 18일 자 공문 245/TLD를 발행했습니다. 상기 명시된 노동보훈사회부 및 베트남 사회보장국의 지침과 유사하게, 이러한 납부 연기는 사회보험 제도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50% 이상이 근무를 중단한 기업들에 적용됩니다.



Contact us

본 Newsletter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Phan Thi Thuy Duong
Partner – Legal services
+84 (28) 3823 0796, ext. 1508
phan.thi.thuy.duong@pwc.com



Lee Moo Yeol (이무열)
Senior Manager, KICPA
+84 24 3946 2246 Ext. 1010
mooyeol.lee@pwc.com



Eva Jaworska
Partner– Legal services
+ 84 (28) 3824 0118, ext. 1510
eva.jaworska@pwc.com



Jo Su Jin (조수진)
Associate
+84 28 3823 0796 Ext. 4630
jo.sujin@pwc.com



Richard Irwin
Partner - Tax & Legal services
+84 (28) 3824 0117
r.j.irwin@pwc.com



www.pwc.com/vn



facebook.com/pwcvietnam



youtube.com/pwcvietnam



linkedin.com/company/pwc-vietnam

At PwC Vietnam, our purpose is to build trust in society and solve important problems. We're a member of the PwC network of firms in **157 countries** with over **276,000 people** who are committed to delivering quality in assurance, advisory, tax and legal services. Find out more and tell us what matters to you by visiting us at www.pwc.com/vn.

©2020 PwC Legal (Vietnam) Co., Ltd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Vietnam member firm,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.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www.pwc.com/structure for further details.